

2024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2023.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원)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2)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본인 부담금	15%	310,485	280,440	218,370	172,740	96,555
	9%	186,291	168,264	131,022	103,644	57,933
	6%	124,194	112,176	87,348	69,096	38,622

3)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0.9182%)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4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일

더 사 랑 재 가 복 지 (관인생략)